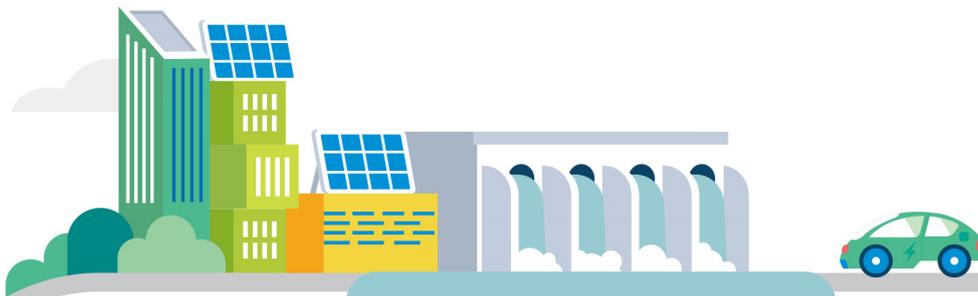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방향

2023. 03.



목차 Contents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방향

1. 공급망 위기 시기의 에너지가격 변화 동향	01
2. 국내외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06
3. 2022년 가정부문 에너지 비용 변화 추이 및 2023년 전망	14
4. 가정부문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20
5. 난방비 급등 사태 대응방향	24
[부록] 가정부문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30



참여 연구진

연구 총괄	정준환 선임연구위원	052-714-2104	jhjung@keei.re.kr
가스	박진호 연구위원	052-714-2227	jhpark@keei.re.kr
석유	김태현 선임연구위원	052-714-2264	thkim@keei.re.kr
전력	박명덕 선임연구위원	052-714-2118	mdpark@keei.re.kr
집단에너지	이태의 연구위원	052-714-2156	lte@keei.re.kr
에너지수요관리	김지효 연구위원	052-714-2103	jihyokim@keei.re.kr
가정부문 통계	남수현 연구위원	052-714-2190	nam.suhyeon@keei.re.kr
에너지복지	박광수 명예선임연구위원	052-714-2189	kspark@keei.re.kr
해외정책동향	이성규 선임연구위원	052-714-2274	leesk@keei.re.kr
	김민규 부연구위원	052-714-2079	minkyu247@keei.re.kr
종합분석	김종익 부연구위원	052-714-2282	jkim@keei.re.kr
	이호무 선임연구위원	052-714-2279	hmlee@keei.re.kr



1 공급망 위기 시기의 에너지가격 변화 동향

(1)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 **(국제 에너지가격 현황)** '22년 국제 에너지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공급불안 요인으로 큰 변동성을 나타냄
 - '22년 연평균 석유가격(두바이유 기준)은 \$96.3/b, 천연가스 가격(유럽 TTF 기준)은 \$40.3/MMBtu, 석탄가격(호주산 기준)은 \$356/ton으로 각각 전년 대비 39%, 150%, 162% 상승하였음
 - **(석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02.24.) 이후 \$100/b 이상을 유지하던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미국·영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 이후 \$120/b 이상까지 증가한 이후('22.03.08.), '22년 12월부터 \$90/b 이하를 유지함
 - **(가스)** '21년 하반기부터 견조하게 상승하던 유럽 가스가격(TTF)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1년 1월 대비 약 1,400%까지 상승('22.08.26.)하는 등 불확실성이 극대화됨
 - ☞ '22년 8월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축소와 유럽 국가들의 동절기 대비 재고 확보로 인한 수요증가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
 - * 연고점('22년 8월) 현물 가격: 미국 Henry Hub, 유럽 TTF, 동아시아 JKM 각각 \$8.8/MMBtu, \$69.9/MMBtu, \$52.2/MMBtu (월평균 가격 기준)
 - **(석탄)** '21년 4분기 이후 유럽의 발전용 석탄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차질이 지속되며 석탄가격은 급등함
 - ☞ '20년 연평균 \$60/ton 수준이던 호주산 석탄가격은 '22년 9월 \$440/ton을 돌파하였고, 이후 등락을 반복 중임

표 1.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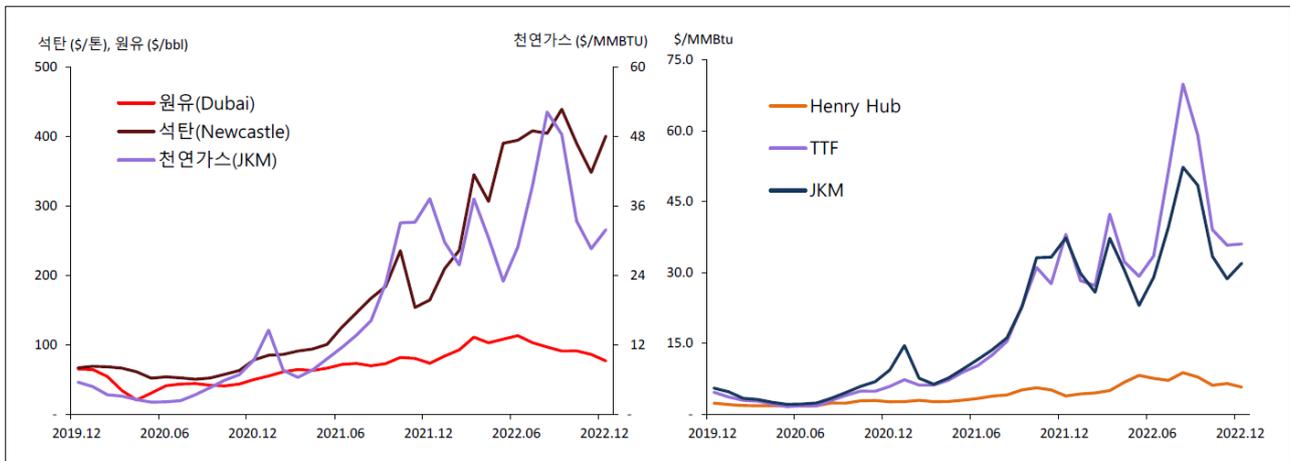
	2020년	2021년				2022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원유(\$/bbl)											
WTI	39.4 (-30.9)	67.9 (72.4)	62.4 (104.8)	71.4 (86.2)	71.5 (80.5)	71.7 (52.3)	94.1 (38.6)	108.3 (73.6)	114.3 (60.3)	83.8 (17.1)	75.3 (5.0)
Dubai	42.2 (-33.6)	69.3 (64.1)	64.4 (91.2)	71.6 (75.5)	(72.6) (75.0)	73.2 (46.9)	96.3 (39.0)	110.9 (72.1)	113.3 (58.2)	91.0 (25.2)	76.6 (4.6)
Brent	43.2 (-32.7)	70.8 (63.8)	65.7 (94.8)	73.4 (80.1)	(74.9) (78.8)	74.8 (48.9)	98.8 (39.6)	112.5 (71.2)	117.5 (60.1)	90.6 (21.0)	80.5 (7.6)
천연가스(\$/MMBTU)											
Henry Hub	2.1 (-15.7)	3.7 (74.4)	2.6 (51.5)	3.3 (92.4)	5.1 (122.1)	3.9 (49.5)	6.5 (75.3)	5.0 (89.9)	7.6 (131.3)	7.8 (53.1)	5.7 (48.7)
TTF	3.2 (-32.5)	16.1 (396.9)	6.1 (125.1)	10.3 (486.8)	22.8 (477.4)	38.0 (548.9)	40.3 (150.3)	42.3 (591.5)	33.5 (225.6)	59.0 (159.0)	36.0 (-5.3)
JKM	4.2 (-25.4)	17.8 (324.9)	6.3 (103.4)	11.5 (441.0)	22.7 (397.0)	37.3 (298.8)	34.1 (92.0)	37.2 (486.7)	28.9 (151.0)	48.4 (113.6)	31.9 (-14.4)

주1) ()는 전년/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주2) JKM(Japan Korea Marker), TTF(Title Transfer Facility), Henry Hub는 각각 동아시아, 유럽, 미국 지역의 대표적 현물가스 가격 지표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그림 1. 국제 주요 에너지가격(좌) 및 국제 천연가스 가격(우)



주1) 원유는 두바이유, 석탄은 호주 뉴캐슬 석탄 기준이며, 모든 가격은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JKM(Japan Korea Marker), TTF(Title Transfer Facility), Henry Hub는 각각 동아시아, 유럽, 미국 지역의 대표적 현물가스 가격 지표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그림 출처: 강병욱, 에너지브리프 2023년 1월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

□ 국제 유가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3년 국제 원유가격(두바이유 기준)은 연평균 \$85.46/b로 전년 대비 (\$96.32/b)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2분기 이후 소폭 상승이 예상됨

표 2. 2023년 원유가격 전망(두바이유 기준, 단위 : \$/b)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연간
기준유가	96.32	83.02	82.59	86.52	89.73	85.46
고유가 ¹⁾		88.76	89.72	93.94	98.98	92.85
저유가 ²⁾		77.30	75.57	78.19	79.86	77.7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준안 전망치(2022.12.)

주요전제 : 세계 경제성장률 2.7%(연평균), 세계 석유수요 2.2백만b/d↑(전년대비), 비OPEC 공급 1.0백만b/d↑(전년대비), OPEC 원유생산 0.2백만b/d↑(전년대비), 달러-유로 환율 \$1.06/€

주1) 러시아의 석유·가스 공급 중단, 산유국 정정 불안에 의한 공급 차질, OPEC+의 고강도 감산 등 반영

주2) 러·우 전쟁 종식, 급속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에 따른 이란 원유수출 재개 등 반영

- (해외 주요 기관) '23년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수준을 \$90~\$105/b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¹⁾
 - JP Morgan, Standard Chartered, 美EIA: \$90~\$92/b 수준으로 전망함
 - Goldman Sachs: 연평균 \$97.5/b, '23년 말 \$105/b에 이른 후 '24년에도 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함
 - ING: '23년 평균 \$104/b에 이르며 3분기와 4분기 가격이 각각 \$105/b와 \$110/b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1)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3-1호를 참고

표 3. 주요 기관별 2023년 국제유가 전망(단위 : \$/b)

두바이유	브렌트유							
KEEI (예경연)	JP Morgan	Standard Chartered	EIA	Fitch Solutions	Goldman Sachs	Bank of America	ING	해외기관 평균
85.5	90.0	91.0	92.0	95.0	97.5	100.0	104.0	95.6

주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준안 전망치(2022. 12.) 및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3-1호 재구성

□ 국제 가스 가격 전망²⁾

- 에너지공급 위기 요인으로 급등한 가스 가격은 '23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나, 러·우 전쟁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단기간 내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 (美 Henry Hub) 美EIA, ING, IHS Markit: '23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5/MMBtu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³⁾⁴⁾⁵⁾
 - (동아시아 JKM) BNEF는 '23년 동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을 약 \$37.5/MMBtu로 전망하였고, IHS Markit은 \$15~\$25/MMBtu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우 불확실함을 강조함⁶⁾
 - (유럽 TTF) BNEF는 '23년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39.8/MMBtu로 전망함

표 4. 주요 기관별 2023년 가스 가격 전망(단위 : \$/MMBtu)

	Henry Hub			JKM		TTF
전망기관	EIA	ING	IHS Markit	BNEF	IHS Markit	BNEF
전망가격	5.0	5.1 ¹⁾	4.9	37.5 ²⁾	15~25	39.8 ³⁾

자료: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3-2호 및 원문 참고하여 재구성

주1) \$6.5/MMBtu(1Q) → \$5.0/MMBtu(2Q) → \$4.3/MMBtu(3Q) → \$4.7/MMBtu(4Q)

주2) \$36.7(1Q) → \$37.2(2Q) → \$37.0(3Q) → \$38.9(4Q)

주3) \$39.9(1Q) → \$39.4(2Q) → \$38.8(3Q) → \$41.0(4Q). BNEF의 전망치가 아닌 TTF 선물(futures) 가격임.

주4) JKM(Japan Korea Marker), TTF(Title Transfer Facility), Henry Hub는 각각 동아시아, 유럽, 미국 지역의 대표적 현물가스 가격 지표

2)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3-2호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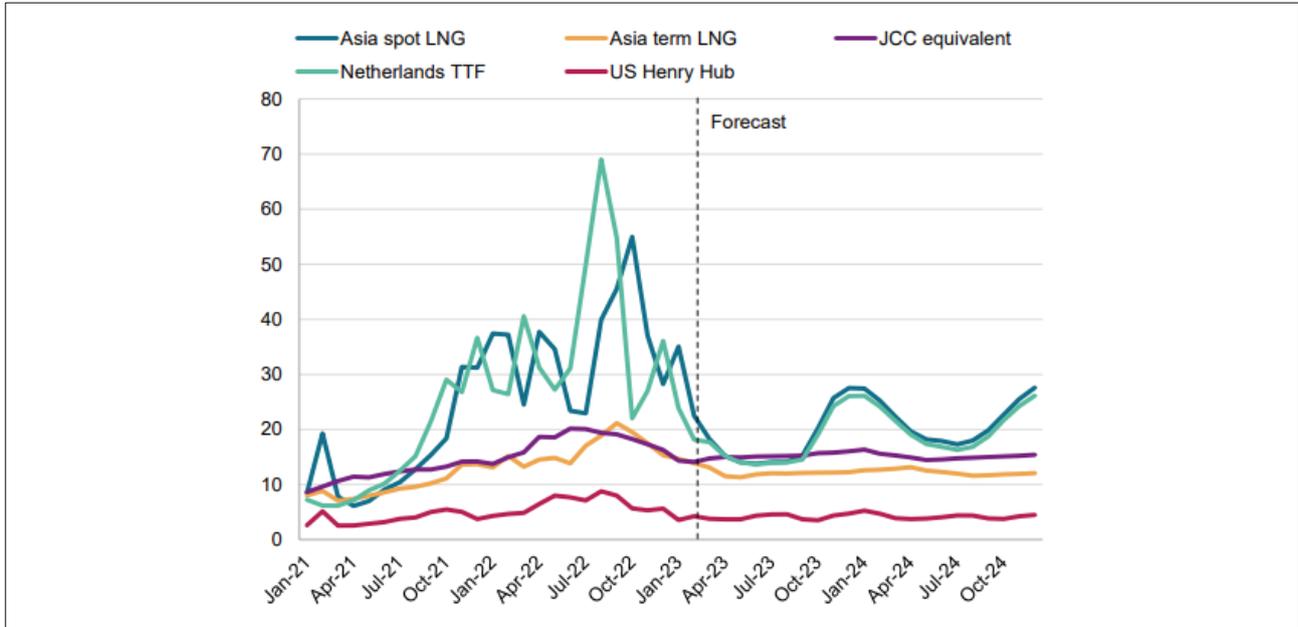
3) EIA(2023.1.10.), Short-Term Energy Outlook

4) ING(2022.12.20.), Energy Outlook 2023: Oil, gas and power markets to remain tight

5) IHS Markit(2022.12.19.), LNG price outlook—December 2022

6) BNEF(2022.12.6.), Global LNG Monthly: China's Demand Upside May Upset Market

그림 2. 주요 천연가스 시장가격 변화 전망(2023-2025)



자료: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2023.2.10.), LNG price outlook February 2023

주: JCC(Japanese Customs-cleared Crude Oil) equivalent는 일본의 원유 수입단가를 의미하며, LNG 장기계약 가격의 주요 지표로 사용됨

-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은 장기계약(약 80%)과 현물구입(약 20%)을 통해 이루어지며,
 - ①국제 원유가격, ②천연가스 현물시장 상황, ③원/달러 환율 등이 국내 천연가스 도입단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임
 - 장기계약 물량의 천연가스 도입단가는 도입계약 가격공식에 따라 5~6개월 전 국제 유가에 의해 결정됨
 - 현물 천연가스 도입단가는 계약 당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거래 쌍방 간에 결정됨(시장상황을 참고할 수 있는 동아시아 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로는 JKM이 대표적)
 - 천연가스 구매대금은 통상적으로 미달러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됨

2 국내외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1) 해외 주요국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추이

- 유럽 주요 국가들(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21년~'22년에 걸쳐 난방용 에너지(가스, 전기)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 (가스 가격) 가스 소매가격 인상분('21년 1월→'22년 11월)은 각각 c€7.8/kWh(프랑스), c€17.2/kWh(독일), c€9.3/kWh(영국)이며, 가격 상승률로는 각각 115%, 273%, 212%에 이룸
 - (전력 가격) 전기 소매가격 인상분('21년 1월→'22년 11월)은 각각 c€9.1/kWh(프랑스), c€31.1/kWh(독일), c€24.0/kWh(영국)이며, 가격 상승률로는 각각 43%, 94%, 104%에 이룸
- 일본과 미국 역시 난방용 에너지(가스, 전기)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유럽 주요 국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일본) 가구당 난방용 에너지소비 지출액 인상률('21년 1월→'22년 11월)*은 가스가 50%(월 2,363엔 증가), 전기가 45%(월 2,809엔 증가)임
 - * 동일한 사용량을 가정(가스: 30m³/월, 전기: 260 kWh/월)
 - (미국) 난방용 가스 소매가격 인상분('21년 1월→'22년 11월)은 \$6/Mcf*(63% 인상)이며, 동기간 전기 소매가격 인상분은 3/kWh(24% 인상)에 해당함
 - * Mcf는 천입방피트(1,000 cubic feet)를 의미
- 러·우 전쟁으로 직접적인 수급불안에 노출된 가스의 소매가격 변동성이 세계 주요국의 전기 소매가격 변동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 해외 주요국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추이(고유단위)

국가	단위	2021						2022					
		1	3	5	7	9	11	1	3	5	7	9	11
가정용 가스 소매가격 변화 추이													
프랑스 ¹⁾	c€ /kWh	6.76	7.19	7.05	7.94	8.74	10.38	10.73	10.64	11.18	11.35	11.36	14.55
독일 ¹⁾		6.30	6.58	6.66	6.77	6.91	12.35	23.13	23.18	13.29	17.23	24.01	23.52
영국 ¹⁾		4.38	4.86	5.04	5.32	5.90	8.75	11.23	13.71	13.91	18.50	10.08	13.67
일본 ²⁾		円/月	4,298	4,403	4,662	4,694	4,742	4,935	5,124	5,611	5,784	5,886	6,461
미국 ³⁾		\$/Mcf	9.6	10.5	14.1	19.8	20.2	13.1	12.0	13.0	17.8	24.6	24.6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 변화 추이													
프랑스 ¹⁾	c€ /kWh	21.0	21.2	21.2	21.3	21.6	22.4	22.3	24.1	23.7	25.2	27.7	30.1
독일 ¹⁾		33.1	33.3	33.3	33.4	33.4	37.2	50.1	41.7	42.7	39.9	54.9	64.2
영국 ¹⁾		23.0	24.5	26.0	26.6	27.7	40.3	47.1	53.8	49.8	63.1	39.5	47.0
일본 ²⁾		円/月	6,317	6,408	6,822	6,973	7,098	7,371	7,631	8,244	8,505	8,871	9,126
미국 ³⁾		센트 /kWh	12.6	13.2	13.9	13.8	14.1	14.1	13.7	14.4	14.9	15.4	16.3

주1) (전기, 가스) Household energy price index (HEPI), 각국 수도인 파리, 베를린, 런던에 거주하는 대표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 및 가스요금 기준
 주2) (전기) 도교전력, meter-rate lighting B, 월 사용량 260kWh 기준 월 지출액; (가스) 도교가스, 소비세 포함 월 사용량 30m³ 표준 가정 기준 월 지출액
 주3) (전기, 가스) EIA, Average residential retail price of electricity and gas

(2) 국내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추이

● (석유류) 등유와 프로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난방·온수용 석유제품임

– 최근 2년간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국제유가 변화에 동조하여 상승하다가, '22년 하반기 국제유가의 하락을 반영하여 추세가 하락 반전되었음

- * 특히, 등유가격은 '22년 리터당 1,485원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하여, 국제유가의 변동률보다 더 큰 변화를 나타냄
- * 국내 등유 및 프로판 가격은 국제유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됨

표 6. 국내 난방용 석유제품 판매가격 및 국제유가 변화 추이

	'20년	'21년					'22년				
	평균	평균	3월	6월	9월	12월	평균	3월	6월	9월	12월
등유 (원/리터)	851 (-11.6)	946 (11.2)	897 (9.7)	914 (1.9)	943 (3.2)	1,095 (16.1)	1,485 (57.0)	1,348 (23.1)	1,602 (18.8)	1,620 (1.1)	1,553 (-4.2)
프로판 (원/kg)	1,851 (-1.0)	2,093 (13.1)	2,029 (8.8)	2,000 (-1.5)	2,160 (8.0)	2,410 (11.6)	2,480 (18.5)	2,412 (0.1)	2,559 (6.1)	2,471 (-3.4)	2,450 (-0.9)
국제유가 (두바이, \$/b)	42.2 (-33.6)	69.3 (64.1)	64.4 (29.3)	71.6 (11.1)	72.6 (1.4)	73.2 (0.8)	96.3 (39.0)	110.9 (51.5)	113.3 (2.1)	91.0 (-19.7)	76.6 (-15.8)

주 : ()는 전년 평균 대비 및 3개월 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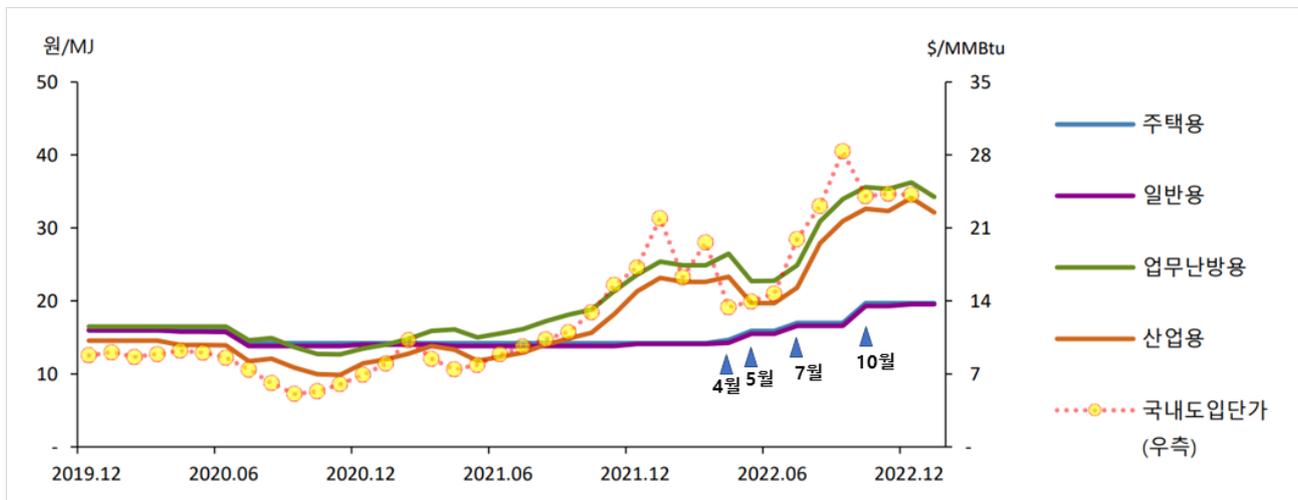
-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가격은 '22년 4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22년 12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19.7원/MJ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은 원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예해 오다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격의 급등요인을 반영하고자 조정하게 됨
 - ☞ 업무난방용·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은 국내 천연가스 도입단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기에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남
 - * 서울지역 소매가격 기준 5.47원/MJ 인상. 기본요금 및 부가세 제외 시 약 38.5% 인상 효과
 - ** 원료비연동제는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할 경우 기준 원료비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민수용은 흡수월, 발전·상업용은 매월 조정
 - 도시가스 가격이 원료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한국가스공사 회계상 미수금으로 구분되며 추후 도매요금에 반영하여 회수될 예정임

표 7. 최근 3년간 도시가스 가격 조정 내역

조정시기	총요금 조정율	주택용	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단가(원/MJ)	상대가격(주택용=100)			
'20년 7월	-10.7%	14.2	100	97.1	102.6	82.6
'22년 4월	3.0%	14.7	100	97.3	180.7	158.9
'22년 5월	8.4%	15.9	100	97.7	142.8	124.1
'22년 7월	7.0%	17.0	100	97.7	146.4	128.5
'22년 10월	15.9%	19.7	100	98.1	180.9	165.8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의 서울도시가스 서울지역 소매가격

그림 3. 천연가스 도입가격 및 용도별 도시가스 가격 변화



주: 용도별 도시가스 가격은 한국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의 서울도시가스 서울지역 소매가격을 이용했으며, 국내 도입단가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수입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서 계산

그림 출처: 강병욱, 에너지브리프 2023년 1월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열) 열요금*은 민수용 도시가스와 유사하게 '20년 7월 요금인하 이후 '22년 세 차례 (4월·7월·10월) 인상되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용도별 요금을 의미함

- 열요금은 도시가스 연료비 변동 및 정산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21년 동절기 대비 약 37.8% 인상되었음

– 주택용 열 요금은 89.88원/Mcal 수준으로, 업무용(116.69원/Mcal)에 비하면 23%, 공공용(101.91원/Mcal)에 비하면 11.8% 저렴함

☞ '22년에 열요금에 미반영된 연료비 차액분은 차기 년도 7월부터 연료비 정산으로 회수 예정임

표 8. 최근 3년간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내역

조정시기	총요금 조정율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단가(원/Mcal)					
'20년 7월	-2.50%	65.23	84.69	73.97	100	129.8	113.4
'22년 4월	2.35%	66.98	86.96	75.95			
'22년 7월	9.81%	74.49	96.71	84.46			
'22년 10월	18.09%	89.88	116.69	101.91			

주) 기본요금은 주택용 52.4원/m², 업무용 396.79원/Mcal, 공공용 361.98원/Mcal로 변동없음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력)** 전기요금은 '22년 세 차례(4월·7월·10월)에 걸쳐 19.3원/kWh, '23년 1분기 13.1원/kWh 인상되었음

–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22년 연평균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는 120.9원/kWh으로 전년 대비 11.4% 상승하였음

* 판매단가는 계약종별(주택용) 전기 판매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계산

– 반면, 22년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196원/kWh으로 전년대비 큰 폭(2.1배) 상승함

– 전력도매가격(SMP)은 국제 에너지(천연가스 및 석탄 등) 가격 변화에 연동되나, 전기요금(판매단가)은 발전부문의 연료비 변동에 연동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22년 10월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판매단가)과 전력도매가격(SMP)의 격차는 128.6원/kWh에 달함

표 9. 연료비연동제 시행(2021년) 이후 전기 요금 조정 내역(단위 : 원/kWh)

조정시기	합계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판매단가 ⁴⁾ (주택용)	SMP ⁵⁾
'21년 4월	변동없음	-	-	-	103.9	76.0
'21년 7월	변동없음	-	-	-	107.7	87.0
'21년 10월 ¹⁾	3.0	-	-	3.0	107.3	107.5
'22년 1월	변동없음	-	-	-	119.1	153.8
'22년 4월	6.9	4.9	2.0	-	112.9	201.6
'22년 7월 ²⁾	5.0	-	-	5.0	127.1	150.6
'22년 10월 ³⁾	7.4	7.4	-	-	123.0	251.6
'23년 1월	13.1	11.4	1.7	-	-	-

주1) 연료비 조정단가가 기존 -3원/kWh에서 0원/kWh으로 조정

주2) 연료비 조정단가가 기존 0원/kWh에서 5원/kWh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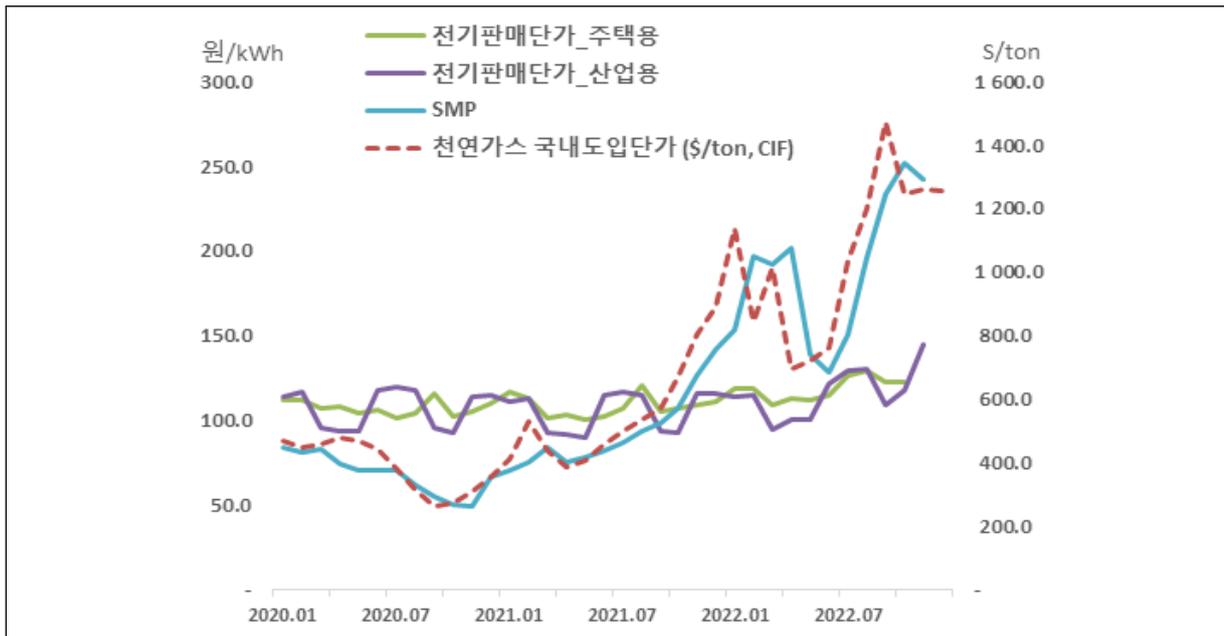
주3) 전력량요금 기준, 일반 산업용 고압A: 7원/kWh, 고압BC: 11.7원/kWh 인상

주4)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높은 단가가 적용)가 시행되고 있어, 요금이 조정되지 않더라도 판매단가는 변화 가능

주5) 전력도매가격, 육지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각 호 및 한국전력통계

그림 4. 전기 계약종별 판매단가 및 전력도매가격(SMP) 추이



자료: 한국전력공사(계약종별 판매 단가, SMP), 무역협회(천연가스 도입단가)

(3) 해외 주요국의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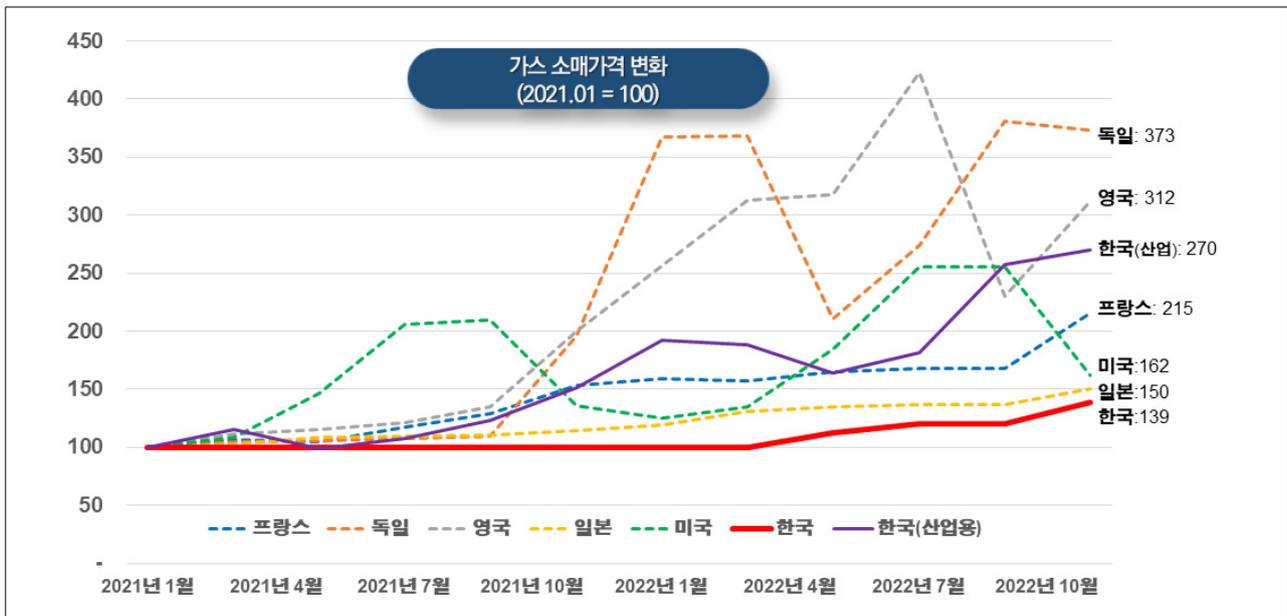
- **(가스 가격)** 국제 에너지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21년 1월)한 이후, 세계 주요국의 난방용 에너지가격은 큰 폭의 변동률을 시현하였음('22년 11월 가격 수준은 '21년 1월 대비 1.5~3.7배 증가)
 - **(영국·독일)** '22년 난방용 가스 가격은 '21년 1월 대비 4배 수준을 넘거나 육박하는 등 극심한 가격변동을 보임
 - **(프랑스)** '22년 11월 난방용 가스 가격의 변동성은 영국과 독일에 비해 완만하지만 '21년 1월 대비 2.1배 수준으로 증가함
 - * 프랑스 정부는 가스 가격을 '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21년 11월~'22년 12월), 이어서 가스 가격 인상을 상한을 15%로 제한('23년 1월~'23년 6월)
 - **(미국·일본)** '22년 11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21년 1월 가격 대비 각각 1.6, 1.5배 수준임
- **(전기 가격)** 해외 주요국의 전기 소매가격 변동성(1.2~2배)은 난방용 가스 가격 변동성(1.5~3.7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됨
 - **(영국·독일)** '22년 11월 전기 소매가격은 '21년 1월 가격 대비 2배 수준에 달함
 - **(프랑스·미국·일본)** '22년 11월 전기 소매가격은 '21년 1월 가격 대비 1.2~1.4배 수준으로 인상됨
 - * 프랑스 정부는 '22년 2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상한을 4%로 제한하였고, 이어서 '23년 2월부터 6월까지 인상을 상한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결정을 단행하였음

(4) 국내 난방용 에너지가격 변화 추이 비교

- 우리나라의 난방용 에너지(가스, 전기)가격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 **(가스 가격)** '22년 우리나라의 가정용(난방) 가스요금 상승('21년 대비 약 38.5%)은 이례적인 인상률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가격 인상률(1.5~3.7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 반면, 산업용 가스 가격은 해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큰 폭의 변동을 보임('21년 1월 대비 '22년 11월 가격이 2.7배 수준으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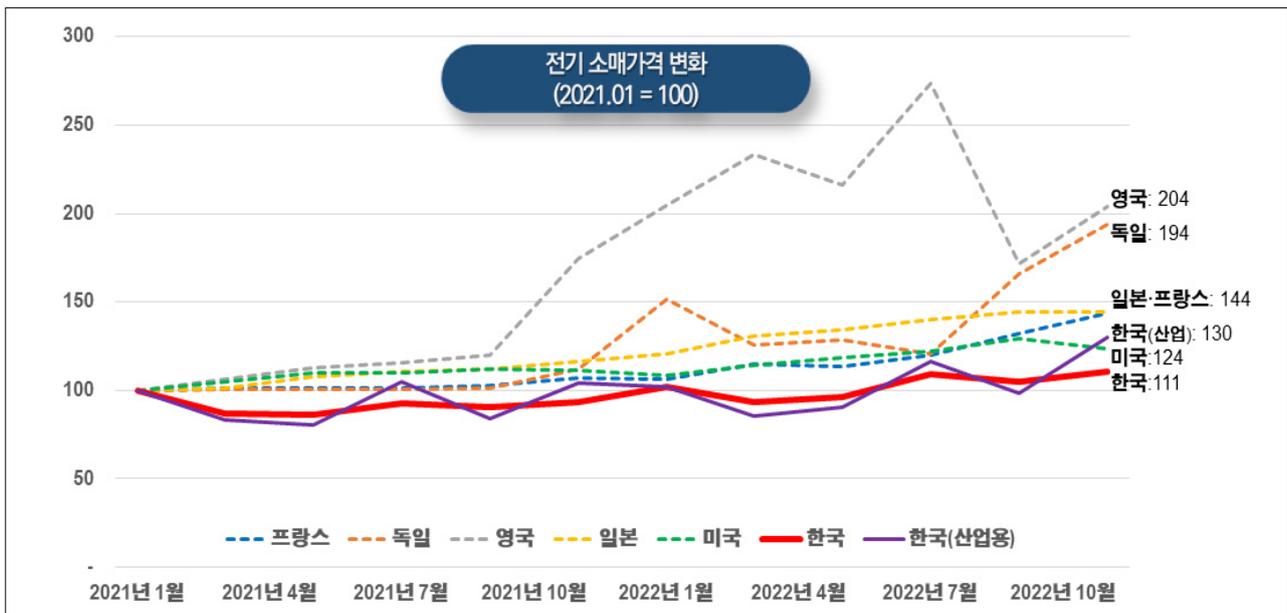
- (전기 가격) 우리나라의 '22년 11월 전기(주택용) 판매단가는 '21년 1월 판매단가 대비 1.1배 수준에 그침

그림 5. 우리나라 및 주요국 가스 소매가격 변화



자료: <표-5>와 <표-7>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6. 우리나라 및 주요국 전기 소매가격 변화



자료: <표-5>와 <표-9>를 활용하여 작성

3 2022년 가정부문 에너지 비용 변화 추이 및 2023년 전망

(1) 도시가스 및 전력 비용

- 우리나라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주로 도시가스와 전기에 의존하고 있음
 - * '19년 기준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 의하면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비중은 도시가스(51.7%), 전기(29.2%), 석유류(8.8%), 지역난방(8.5%), 연탄(1.1%), 신재생/기타(0.6%) 순임
 - '22년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5.47원/MJ, 38.5%)과 전기 요금 인상(+19.3원/kWh)은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도시가스 소비 지출)**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수용가당 연평균 사용량과 지출액(기본료 및 부가세 제외)은 '21년 24,797MJ과 35.3만 원에서 '22년 25,328MJ과 40.5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22년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수용가의 연평균 사용량은 전년 대비 약 2.1%, 도시가스 소비 지출액은 약 14.8% 증가함
 - '22년 12월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수용가의 평균 지출액은 요금인상 효과와 난방용 소비 증가가 반영되어 전년 동월 대비 약 43.4% 상승한 약 8.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전기 소비 지출)** '22년 가구당 연평균 전기 소비량은 2,822kWh이며 전년 평균 소비량 2,834kWh 대비 약 0.4% 감소하였음
 - '22년 가구당 연평균 전기소비 지출액은 33.4만 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으로 전년도 지출액 30.4만 원 대비 약 9.7% 증가하였음

표 10.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수용가당 도시가스 소비량 및 지출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계
난방도일 ¹⁾														
2021	631.5	427.5	278.5	119.6	28.4	0	0	0	0	107.9	294.6	539.9	202.3	2,427.9
2022	626	536	314	107	19	1	0	0	1	114	239	645.3	216.9	2,602.3
	(-0.9)	(25.3)	(12.6)	(-10.5)	(-31.7)	-	-	-	-	(6.0)	(-18.8)	(19.5)	(7.2)	(7.2)
수용가당 평균 도시가스 소비량 ²⁾ (천MJ)														
2021	5.5	4.4	3.1	1.9	1.2	0.6	0.3	0.3	0.3	0.8	2.3	4.1	2.1	24.8
2022	5.3	4.9	3.6	2.1	0.9	0.5	0.4	0.3	0.4	0.9	2.0	4.2	2.1	25.3
	(-4.4)	(11.8)	(14.1)	(9.7)	(-19.3)	(-17.7)	(10.2)	(-6.8)	(10.5)	(7.3)	(-12.6)	(3.6)	(2.1)	(2.1)
수용가당 평균 도시가스 소비 지출액 ³⁾ (천원)														
2021	78.9	62.1	44.4	26.7	16.5	8.7	5.0	4.0	4.8	11.5	32.4	57.6	29.4	352.7
2022	75.5	69.5	50.7	30.2	14.9	8.0	6.5	4.5	6.4	17.1	39.2	82.6	33.7	404.9
	(-4.4)	(11.8)	(14.1)	(13.0)	(-9.9)	(-8.1)	(31.6)	(11.3)	(31.9)	(48.5)	(20.9)	(43.4)	(14.8)	(14.8)

주 : ()는 전년 동 시점 대비 증가율(%)

주1) 일평균기온이 기준 온도(18℃)보다 낮은 경우는 난방도일로 계산

주2)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량을 가정용(난방) 수용가 수로 나눈 수치

주3) 수용가당 평균 사용량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곱하여 계산. 기본요금 및 부가세 제외

자료: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용도별 수요가수 및 공급량 등을 참고

표 11. 가구당 전기 소비량 및 지출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계
가구당 평균 전기 소비량 ¹⁾ (kWh)														
2021	255	246	211	217	205	213	247	330	253	215	218	225	236	2,834
2022	245	247	217	221	201	209	264	314	258	210	212	224	235	2,822
	(-3.7)	(0.4)	(3.0)	(2.0)	(-1.7)	(-1.8)	(6.8)	(-5.1)	(2.1)	(-2.3)	(-2.7)	(-0.5)	(-0.4)	(-0.4)
가구당 평균 전기 소비 지출액 ²⁾ (천원)														
2021	29.9	28.2	21.8	22.8	20.6	22.2	23.3	34.4	29.5	23.1	23.6	25.1	25.4	304
2022	28.9	29.1	23.6	25.9	22.0	23.5	28.7	36.0	34.3	26.2	26.6	29.2	27.8	334
	(-3.4)	(3.3)	(8.4)	(13.2)	(6.5)	(6.1)	(23.4)	(4.6)	(16.3)	(13.5)	(12.6)	(16.4)	(9.7)	(9.7)

주 : ()는 전년 동 시점 대비 증가율(%)

주1) 한국전력 전력데이터 개발 포털시스템(<https://bigdata.kepco.co.kr/>)에서 발표하는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 기준

주2)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 판매요금을 적용하여 계산. 부가세 및 전력기반요금 제외

(2) 난방 형태별 연료비 부담 비교

- 난방연료별 난방비 부담은 석유류(등유, 프로판)*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열량단가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등유와 프로판은 도시가스 대비 약 2.6배와 3배 높은 가격에 판매 중임('22년 기준, 열량당 단가 비교 시)
 - 특히 등유, 프로판은 취약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연료이고, 소매가격에 국제유가가 직접 반영되어 국내 가격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할 경우 석유를 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에 비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함

- 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전국적으로는 11% 수준이나, 제주(62.2%), 전남(40.7%), 경남(32.2%)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침

표 12. 주택용 난방에너지 소비 구조(단위 : %)

지역	전기 ¹⁾	석유 ²⁾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기타 ³⁾
서울	25.7	1.2	64.8	6.7	1.4	0.2
경기	30.3	2.5	50.4	15.9	0.6	0.4
인천	31.8	2.7	56.7	6	1.2	1.7
울산	34.6	2.7	62.7	-	-	-
대전	28.0	6.7	59.5	5.1	-	0.7
광주	28.0	7.6	61.5	0.7	1.3	0.9
부산	31.5	9.1	54.6	4.3	-	0.5
대구	29.3	10.9	50.9	6.8	1.5	0.5
세종	34.5	11.8	36.2	17.3	-	0.2
경북	29.6	20.7	37.4	1	10.9	0.4
충북	33.4	21.6	31.0	4.8	8.5	0.8
전북	27.7	21.6	43.2	-	2.9	4.5
강원	31.1	24.3	29.5	-	14.9	0.1
충남	30.9	26.0	36.4	1.3	4.8	0.6
경남	32.0	32.2	30.2	3.6	0.6	1.4
전남	32.2	40.7	26.0	-	0.3	0.8
제주	26.5	62.2	2.4	-	5.0	3.9
전국	29.5	11.0	49.3	7.0	2.4	0.7

주1) 심야전기 포함

주2) 등유, 프로판, 기타석유(중앙난방의 연료가 BC유와 정제유인 경우) 포함

주3) 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응답 설비 용량 기준 생산량과 펄스·목재의 소비량을 합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기준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연구

(3) '23년 가구당 도시가스 및 전기 지출액 전망

- **(도시가스 지출액 전망)** '23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수용가당 연평균 지출액은 요금 인상 시나리오별로 전년대비 22.9~30.4% 증가(기본료 및 부가세 제외)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가정) '23년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은 '22년과 동일

※ (시나리오) ① '23년 요금인상 없이 동결 ② '23년 한 차례(4월) 2.6원/MJ 인상

- **(시나리오1)** '23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이 인상없이 현 수준(19.7원/MJ)에서 동결될 경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수용가당 연평균 지출액은 전년대비 2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2년 40.5만원→'23년 50.4만원)
- **(시나리오2)** '23년 4월 도시가스요금이 인상(2.6원/MJ)된 후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수용가당 연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약 3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2년 40.5만원→'23년 53.4만원)

표 13. 요금인상 시나리오별 가정용(난방) 도시가스 수용가당 소비 지출액 전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계
2022년 수용가당 평균 도시가스 소비 지출액(천원)														
	75.5	69.5	50.7	30.2	14.9	8.0	6.5	4.5	6.4	17.1	39.2	82.6	33.7	405
	(-4.4)	(11.8)	(14.1)	(13.0)	(-9.9)	(-8.1)	31.6)	(11.3)	(31.9)	(48.5)	(20.9)	(43.4)	(14.8)	(14.8)
2023년 수용가당 평균 도시가스 소비 지출액 전망(천원)														
S1 ¹⁾	104.5	96.2	70.2	40.5	18.5	9.9	7.6	5.2	7.4	17.1	39.2	87.7	42.0	504
	(38.4)	(38.4)	(38.4)	(34.4)	(24.0)	(24.0)	(15.9)	(15.9)	(15.9)	(0.0)	(0.0)	(0.0)	(22.9)	(22.9)
S2 ²⁾	104.5	96.2	70.2	45.9	20.9	11.2	8.6	5.9	8.4	19.4	44.4	99.3	44.5	534
	(38.4)	(38.4)	(38.4)	(52.1)	(40.4)	(40.4)	(31.2)	(31.2)	(31.2)	(13.2)	(13.2)	(13.2)	(30.4)	(30.4)

주요전제: '23년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은 '22년과 동일 가정, 기본료 및 부가세 제외

주 : ()는 전년 동 시점 대비 증가율(%)

주1) (시나리오1) '23년 요금인상 없이 동결 가정

주2) (시나리오2) '23년 4월 한 차례 2.6원/MJ 인상 후 동결 가정

● **(전기소비 지출액 전망)** '23년 가구당 연평균 전기소비 지출액은 요금인상 시나리오별로 전년대비 17.5~23.5% 증가(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가정) '23년 가구당 월별 전기사용량은 '22년과 동일 가정

※ (시나리오) ① '23년 1월 13.1원/kWh 전기요금 인상 후 동결 ② '23년 두 차례 (1월, 7월) 각각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

– **(시나리오1)** '23년 1월 전기요금 인상(13.1원/kWh) 후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약 17.5% 증가('22년 33.4만원→'23년 39.2만원)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2)** '23년 1월에 이어 7월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13.1원/kWh)할 경우 가구당 연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약 23.5% 증가('22년 33.4만원→'23년 41.2만원)할 것으로 예상됨

표 14. 요금인상 시나리오별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 전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합계
2022년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 지출액(천원)														
	28.9	29.1	23.6	25.9	22.0	23.5	28.7	36.0	34.3	26.2	26.6	29.2	27.8	334
	(-3.4)	(3.3)	(8.4)	(13.2)	(6.5)	(6.1)	(23.4)	(4.6)	(16.3)	(13.5)	(12.6)	(16.4)	(9.7)	(9.7)
2023년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 지출액 전망(천원)														
S1 ¹⁾	35.9	36.2	29.8	31.1	26.8	28.5	33.7	41.9	39.1	28.6	29.0	31.7	32.7	392
	(24.4)	(24.3)	(26.4)	(20.4)	(21.8)	(21.2)	(17.3)	(16.4)	(14.1)	(9.1)	(9.1)	(8.8)	(17.5)	(17.5)
S2 ²⁾	35.9	36.2	29.8	31.1	26.8	28.5	37.2	46.1	42.6	31.4	31.9	34.7	34.3	412
	(24.4)	(24.3)	(26.4)	(20.4)	(21.8)	(21.2)	(29.6)	(28.1)	(24.2)	(19.9)	(19.7)	(19.0)	(23.5)	(23.5)

주요전제: '23년 가구당 월별 전기사용량은 '22년과 동일 가정, 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주: ()는 전년 동 시점 대비 증가율(%)

주1) (시나리오1) '23년 1월 13.1원/kWh 전기요금 인상 후 동결 가정

주2) (시나리오2) '23년 두 차례 (1월, 7월) 각각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 가정

● **(난방비 부담 감축 요건 및 전망)** 난방비 부담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1)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2)한전 및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국제 에너지가격)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 주요 기관의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전망에 따르면 단기간 내 러·우 전쟁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임
- (연료비 원가 반영)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주택(난방)용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한전 적자 및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난방비 하락 규모) 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에너지공급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요금인하 폭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분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난방 에너지 공급사 재정상황) 한전, 가스공사 등 난방 에너지 공급사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하여 난방용 에너지(도시가스·전기) 요금은 상당 기간(3년 이상) 코로나 시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

4 가정부문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⁷⁾

-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가스와 전기 소매가격은 '21년 1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은 가정부문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에너지 요금의 한시적 인상 억제, 보조금 지급, 세율 인하 등 크게 3가지 형태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전기·가스요금 한시적 인상 억제)**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거나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고, 상향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
 - (한국)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취약계층 도시가스 할인 확대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 (프랑스) 가스요금 동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률 상한 제한
 - (독일) 전기·가스요금 상한제 실시
 - (영국) 전기·가스요금의 상한선 상향 범위 축소
- **(보조금 지급)**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절전 참여 가구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정부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한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일본) 절전 포인트 제도 실시, 전기·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보조금 지급
 - (미국) 저소득층 겨울 난방 비용 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 비용 지원

※ 미국은 1976년 도입된 WAP(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와 1980년 도입된 LIHEAP(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에 시행해오던 방식으로 지원함

7)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바람

- **(세율 인하)** 가정용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형태로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함
 - (프랑스) 가정용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
 - (독일) 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
- **(부담금 폐지 및 요금할인)** 부담금 폐지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하거나 동절기 에너지 요금을 할인함
 - (독일) EEG 부담금 폐지
 - (영국) 동절기 에너지 요금 할인

표 15. 가정부문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구분	전기·가스요금 한시적 인상 억제	보조금 지급, 세율 인하 등
<p>[전기 및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인상 요인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사업이 적자·미수금 형태로 흡수 <p>[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폭을 50% 확대('23년 1월~) <p>[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23.02.01) - 최대 지원금액 59.2만원은 동절기('22년 12월~'23년 3월) 4개월 기준이며, 추가 지원은 동절기('22년 12월~'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짐 -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원)으로 지원 확대 계획 발표('23.02.15) <p>[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완화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kWh)까지 '23년 1월 요금인상분(13.1원/kWh)을 적용하지 않는 부담완화 조치 시행('23년 1월~'23년 12월) 	<p>[동절기 에너지비우려 지원단가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동절기 지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비우려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1.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약 23% 인상('22.07.08) - 지원단가를 15.2만원으로 인상 계획 발표('23.01.09) - 지원단가를 15.2만원에서 2배 인상하여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 계획 발표('23.01.26) 	<p>[세율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22.5/MWh에서 €1/MWh로 인하('22년 2월~'23년 1월)
<p>[가스요금 동결 및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요금을 '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21년 11월~'22년 12월) ·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4%로 제한('22년 2월~'22년 12월) ·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상한을 15%로 제한('23년 1월~) - 전기요금: '23년 2월~'23년 6월까지 적용 - 가스요금: '23년 1월~'23년 6월까지 적용 		
<p>한국</p>		
<p>프랑스</p>		

구분	전기·가스요금 한시적 인상 억제	보조금 지급, 세율 인하 등
<p>독일</p>	<p>[전기/가스요금 상한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가스요금 상한제 실시('23년 1월~'24년 4월) - 가계와 중소기업은 '22년 연간 소비량의 80%에 대해 전력은 40유로센트/kWh, 가스는 12유로센트/kWh(기준에는 '22년 11월 기준으로 전력은 39유로센트/kWh 가스는 21유로센트/kWh) <p>[EEG 부담금 폐지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G 부담금 영구 폐지. 기존 3.72센트/kWh에서 0센트/kWh로 인하('23년 1월~) 	<p>[세율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부문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가스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7%로 인하('22년 10월~'24년 3월)
<p>영국</p>	<p>[전기/가스요금 상한선 상향 범위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했던 전기·가스요금 상한선 상향을 철폐하고 상향 범위 축소('22년 10월~) - 3인 가구 기준, £1,277('21년 10월)→ £1,971('22년 4월)→ £3,549('22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음) - 기존 계획을 철폐하고 £2,500으로 상한선 조정('22년 10월~'23년 3월) 	<p>[에너지요금 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00의 동절기 에너지요금 할인('22년 10월~'23년 3월) - 영국은 전기요금을 9.2%('21년 4월), 12%('21년 10월), 54%('22년 4월) 인상
<p>일본</p>		<p>[절전 포인트 제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전량에 상관없이 절전에 참여하는 가구에 2,000엔의 포인트 지급('22년 8월~) <p>[보조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저압) 전기요금 7엔/kWh, 기업용(고압) 전기요금 3.5엔/kWh. 가스요금 30엔/m³ 지원('23년 1월~'23년 9월) - 소매 전기·가스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면 정부가 사후에 인하분을 지원하기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
<p>미국</p>		<p>[보조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 비용 지원을 위해 약 45억 달러를 LIHEAP에 지급('22년 11월)²⁾ <p>[주최 에너지 효율향상 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억 달러 규모의 주택 에너지효율향상 자금지원 발표('22.03.30) - 약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재 추가, 가전제품 교체, 창호 교체

주1) EEG 부담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포함
 주2) LIHEAP: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자료('23.02.06) 및 직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바람

5 난방비 급등 사태 대응방향

(1) 동절기('23년~'24년) 대응방향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조치 준비

- **(소득지원 강화)** 동절기 난방비 지출 급등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신속한 소득지원 단행이 필요함
 - － 특히,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분기에 20% 내외로 매우 높은 소득 1분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중은 에너지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급등 가능성이 높음

표 16.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율(단위 : %)

	2019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분위	22.6	10.3	8.3	12.8	23.9	10.5	7.8	10.5	21.9	10.3	7.2	10.3	18.7	9.5	8.2	12.4
2분위	10.7	4.9	3.4	4.9	9.5	4.7	3.3	5.0	9.0	4.5	3.1	5.0	9.0	4.3	3.9	5.3
3분위	7.1	3.6	2.4	3.6	6.7	3.6	2.5	3.4	6.4	3.5	2.4	3.3	5.8	3.1	2.6	3.8
4분위	5.7	3.1	2.1	2.8	4.9	2.8	2.0	2.8	5.2	2.7	2.0	2.6	4.8	2.5	2.1	3.0
5분위	4.7	2.8	1.8	2.5	4.4	2.5	1.8	2.5	4.5	2.4	2.0	2.4	4.3	2.3	2.0	2.8
6분위	4.1	2.3	1.5	2.1	3.9	2.5	1.7	2.3	4.0	2.1	1.6	2.2	3.7	2.0	1.9	2.5
7분위	3.7	2.1	1.5	2.0	3.5	2.2	1.5	2.1	3.4	2.0	1.5	1.9	3.1	2.0	1.7	2.1
8분위	3.2	1.9	1.4	1.7	3.1	2.0	1.3	1.8	3.1	1.8	1.4	1.7	3.1	1.7	1.5	2.0
9분위	2.7	1.7	1.2	1.5	2.5	1.7	1.1	1.6	2.6	1.6	1.3	1.5	2.5	1.4	1.4	1.7
10분위	1.8	1.2	0.8	1.0	1.7	1.2	0.8	1.1	1.8	1.0	1.0	1.0	1.6	1.0	1.0	1.1
평균	3.7	2.2	1.5	2.0	3.5	2.2	1.5	2.1	3.6	2.0	1.6	2.0	3.4	1.9	1.7	2.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용어 정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하는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각각의 수급권자로 지정함

* '23년 중위소득: 월 540만원(4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30%: 162만원, 40%: 216만원, 47%: 254만원, 50%: 27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함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대상임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 가스공사와 한전은 요금할인 대상 선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취약계층 등의 용어를 혼용함
 - (가스공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 (한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요금할인 대상자 순으로 범위가 확대됨
 -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요금할인 대상자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서술함

● **(난방연료 형태별 지원 차별화)** 취약계층의 난방 에너지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등유, 프로판 등)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난방연료 선택이 제한적인 지역(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열효율을 감안한 후 동일한 열량을 기준으로 난방용 에너지별 가격을 비교할 경우, 등유와 프로판은 도시가스 대비 약 2.6배와 3배 높은 가격에 판매 중임

표 17. 난방연료별 가격 비교(2022년 평균)

2022년	연탄	등유	프로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고유가격 (단위)	750 (원/개)	1,485 (원/리터)	2,480 (원/kg)	16.6 (원/MJ)	119.9 (원/kWh)	74.1 (원/Mcal)
열량가격(원/MJ) (도시가스=100)	11.3 (68)	40.5 (244)	49.2 (296)	16.6 (100)	33.3 (201)	17.7 (107)
열효율	0.80	0.85	0.90	0.90	0.95	0.90
열효율 감안 열량가격(원/MJ) (도시가스=100)	14.1 (77)	47.6 (258)	54.7 (296)	18.4 (100)	35.0 (190)	19.7 (107)

주: 연탄 소매점 판매가격, 등유프로판 주유소 및 판매소 판매가격,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주택용 판매가격, 전기는 주택용 판매단가 기준

● **(취약계층별 지원 차별화)** 난방용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범위 및 지원 수준은 취약계층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예산 한도 내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85.7만('23년)

** 의료급여수급자(세대주 기준): 117.7만, 기초생활수급가구: 163.8만, 총가구수: 2,202.3만 (보건복지통계연보 '21년 기준)

※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포함하는 국가 복지체계 상의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발표함(2023.2.1.)⁸⁾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동절기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23.2.1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대상가구 선별·확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요금할인 정책 자제)** 에너지 소비절감 유인체계 유지·강화를 위해 일률적인 요금할인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도시가스, 전기, 열 등의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할인은 관련 기업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 요금인상 기조에 대한 국민수용성 확보 노력

● 현재 주택용 gas와 전기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중임

– 이는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누적되고 있어 원가 이하의 공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음

● 한전과 가스공사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향후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전의 영업적자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22년 말 기준 각각 약 32.6조 원과 8.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됨

– 정부(기획재정부)는 요금인상분을 '23년부터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하여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및 미수금 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임⁹⁾

– 추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매요금 인하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 요금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전기 및 가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요금인상 기조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요금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9)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1.)

(2) 중·장기 대응방향

□ 국제 에너지가격을 반영한 에너지요금: 원가주의 확립

- **(시장기능 강화)**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통해 소비주체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조성이 필요함
 - 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 도시가스 원료비 및 전력 연료비 인상분을 판매요금에 반영하여 시장기능 정상화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임
 - 低에너지가격 수준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유인이 반감되며, 특정 에너지의 가격상승 억제에 상대가격 변화를 통해 에너지원 간 대체를 유발하여 수요절감 효과를 제한함
 - 따라서 高에너지가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연료비 및 원료비 상승분이 전기 및 가스 판매가격에 연동되어야 함
 - 물가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인상 억제(연동제 유보)는 단기적이면서 급격한 가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무역적자 악화 대비)**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격을 연료비 및 원료비에 연동시키지 않을 경우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 무역수지 추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연계)** 에너지요금의 변동성 심화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요금 변동폭의 상하한 비율을 설정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현재 에너지 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에너지 관련 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난방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가정 부문에서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비절감(절약)과 중장기적으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함
- **(고효율기기 보급·절약 유도)** 우선적으로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적 행태 변화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에서 보일러 등의 기기 교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함
 - ☞ 전력효율향상사업, 친환경보일러지원금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지원
 - 에너지 캐쉬백 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행태 변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 에너지캐쉬백 사업(전기·도시가스) 등의 행태변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속적 제도 보완을 통해 전국민 대상 절약 행태 확산
- **(주택성능 개선)**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은 장기간에 걸친 건물의 수명 기간 내 효과가 지속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의 목적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함
 -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형태(석유·연탄 사용)를 대상으로 한 효율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주택 대상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제도연계 강화)** 주택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개선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사의 EERS 제도를 저소득층 대상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 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등과 연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 해외에서는 EERS 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고효율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부록 : 가정부문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1) 한국

● 난방 관련 에너지 소매요금 인상 억제

- LNG 도입비용 상승분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관련 기업이 적자, 미수금 형태로 흡수하게 함으로써 난방비 인상을 전반적으로 억제함

●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요금 할인폭을 50% 확대하고, '23년 1월부터 소급적용함('23.01.12 발표)¹⁰⁾

☞ (추가 인상 계획 발표)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함('23.01.26 발표)¹¹⁾

표 18.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대 상	적용시기	月 할인폭 확대 ¹⁾	月 할인폭 추가 확대 ²⁾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 (12~3월)	24,000원→36,000원	36,000원→72,0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동절기 (12~3월)	12,000원→18,000원	18,000원→36,000원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 (12~3월)	6,000원→9,000원	9,000원→18,000원

주1) 산업통상자원부(2023.01.12.) 보도자료

주2) 산업통상자원부(2023.01.26.) 보도자료

●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완화 조치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약 313 kWh)까지 '23년 1월 요금인상분 (13.1원/kWh)을 적용하지 않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함('23년 1월~'23년 12월)¹²⁾

10) 산업통상자원부(2023.01.12.) 보도자료

11) 산업통상자원부(2023.01.26.) 보도참고자료

12)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사회복지시설에 월 8,000~16,000원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운영 중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22년 7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 대책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1.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인상함
- ☞ (추가 인상 계획 발표) 15.2만원으로 추가 인상('23.01.09.)¹³⁾,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 계획 발표('23.01.26)¹⁴⁾

표 19.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인상

대 상	적용시기	지원단가 인상 ('22.07.08 발표)	지원단가 추가 인상 ('23.01.09 발표)	지원단가 추가 인상 ('23.01.26 발표)
에너지 취약계층 ¹⁾	'22년 10월~	118,000원 →145,000원	145,000원 →152,000원	152,000원 →304,000원

주1) 에너지취약계층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07.08.)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산업통상자원부(2023.01.12.)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01.26.)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동절기 관련 내용만' 작성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

-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함 ('23.02.01.)¹⁵⁾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함
-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2만원¹⁶⁾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함
- ☞ 추가 지원은 동절기('22년 12월~'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짐

13) 산업통상자원부(2023.01.09.) 보도자료

14) 산업통상자원부(2023.01.26.) 보도참고자료

15) 산업통상자원부(2023.02.01.), 보도참고자료

16) 최대 지원금액 59.2만원은 동절기('22.12월~'23.03월) 4개월 기준

표 20.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동절기 추가 지원대책(가스요금 할인)

대 상	기존 지원금액	추가 지원금액 ('23.02.01 발표)	최대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44,000원	448,000원	592,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8,000원	304,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144,000원	448,000원	
교육급여 수급자	72,000원	520,000원	

주1)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이며, 최대 지원금액 592,000원은 동절기('22년 12월~'23년 3월) 4개월 기준임
 주2) 정부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3.02.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02.01.) 보도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프랑스

●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제한

- 정부는 가스요금을 '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함('21년 11월~'22년 12월)¹⁷⁾
- 정부는 '22년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 상한을 4%로 제한함('22년 2월)¹⁸⁾
 - ☞ 기간은 당초 '22년 4월 종료에서 이후 '22년 12월 종료로 연장함¹⁹⁾²⁰⁾
- 정부는 '23년 전기·가스요금의 인상률 상한을 제한함²¹⁾
 - ☞ 가스요금 15%('23년 1월~'23년 6월), 전기요금 15%('23년 2월~'23년 6월)

● 전기 소비세 인하

-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22.50/MWh에서 €1/MWh로 인하함('22년 2월~'23년 1월)²²⁾

17) RÉPUBLIQUE FRANÇAISE(2022.06.27.), Regulated gas sales prices: prices frozen until 31 December 2022

18) EDF(2022.01.13), Exceptional measures announced by the French Government

19) Bruegel(2022.06.13.), National policies to shield consumers from rising energy prices

20) 에너지경제연구원(2022.06.1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21) RÉPUBLIQUE FRANÇAISE(2023.01.04.), Increase in energy prices: the tariff shield extended in 2023

22) La Tribune(2022.01.30.), La taxe sur l'électricité réduite au minimum

(3) 독일

●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상한제 실시

-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축소의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 및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상한제를 실시함('23년 1월~'24년 4월)²³⁾²⁴⁾
- ☞ '22년 연간 소비량의 80%에 대해 전력은 40유로센트/kWh, 가스는 12유로센트/kWh로 제한하며, 약 €540억의 비용 지출이 예상됨
- ※ 기존에는 '22년 11월 기준으로 전력은 39유로센트/kWh 가스는 21유로센트/kWh

● EEG 부담금 폐지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발전소의 확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EEG 부담금²⁵⁾을 영구적으로 폐지함('23년 1월~)²⁶⁾
- ☞ EEG 부담금은 '22년 1월 1일자로 6.5센트/kWh에서 3.72센트/kWh로 한 번 인하된 적 있으며, 이번 폐지 조치에 따라 EEG 부담금을 기존 3.72센트/kWh에서 0센트/kWh로 인하함
- ☞ EEG 부담금 폐지를 통해 '21년에 비해 연간 약 €300(4인 가정 기준)의 비용 경감이 예상됨

● 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

- 가스 추가부담금에 대한 가정부문 부담완화를 위해 가스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7%로 인하함('22년 10월~'24년 3월)²⁷⁾
- ☞ 에너지 기업 구제를 위한 자원마련을 위해 천연가스에 2.4유로센트/kWh의 추가 부담금(~'24년 3월)을 도입하여 연간 약 €480(4인 가정 기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가스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함

23) Bloomberg(2022.11.22.), Germany Plans €54 Billion Package to Contain Energy Surge

24) Reuters(2022.12.15.), German parliament passes 100 bln eur package to cap energy bills

25) 재생에너지(Erneuerbare-Energien-Gesetz) 부담금으로 알려져 있음

26) The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2022.04), Relief for electricity consumers

27) Bloomberg(2022.08.18.), Germany Slashes VAT on Gas to Ease Burden From Soaring Costs

(4) 영국

● 전기·가스요금 상한선 상향 범위 축소

–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Ofgem은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가정용 에너지가격 상한을 '22년 4월과 '22년 10월에 각각 인상할 것을 발표함²⁸⁾²⁹⁾

※ 영국은 에너지가격상한제(Default Tariff Cap, DTC)를 '19년 1월에 처음 도입, 상한선은 6개월마다 검토하여 책정

☞ '22년 4월 인상으로 기본요금제(default tariff)를 사용하는 가구당 에너지가격 상한은 연간 £1,277에서 £1,971로 인상됨('22.05.26)³⁰⁾

☞ 정부는 '22년 10월부터 2년 간 가정용 에너지요금의 상한선을 연간 £2,500로 두겠다고 발표('22년 9월)³¹⁾, 연간 £3,549의 상한선을 두는 기존 계획을 철폐함

※ 당초 '22년 10월 인상으로 연간 £3,549로 인상되고, '23년 봄까지 연간 £6,60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³²⁾

☞ 그러나, 기존의 발표를 다시 한 번 철회하고,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만 £2,500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발표함('22년.10월)³³⁾

※ 정부는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500억 상당의 에너지 지원패키지를 발표함('22.09.07). 이 중 가정부문 지원을 위한 에너지요금 인하 및 일회성 지원금에 약 £900억을 지출할 예정임³⁴⁾

● 에너지요금 할인

– 가정부문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총 £400의 동절기 에너지요금을 할인함('22년 10월 ~'23년 3월)³⁵⁾³⁶⁾

※ 영국은 전기요금을 9.2%('21년 4월), 12%('21년 10월), 54%('22년 4월) 인상한 바 있음

28) Independent(2022.02.23), What is the energy price cap and what does it mean for you?

29) Financial Times(2022.08.27), UK households to be hit by 80% rise in energy bills

30) Financial Times(2022.05.26), UK introduces energy windfall tax after months of indecision

31) Bloomberg(2022.09.06.), Truss Drafts £130 Billion Plan to Freeze UK Energy Bills

32) Financial Times(2022.08.27), UK households to be hit by 80% rise in energy bills

33) Bloomberg(2022.10.17), UK Scraps Energy Bill Price Freeze After This Winter

34) CNN Business(2022.09.07), The UK is preparing a huge energy bailout that could cost \$172 billion

35) UK government(2022.04.01), Energy bills support scheme explainer

36) Financial Times(2022.05.27), North Sea oil and gas producers hit back at Sunak's £5bn windfall tax

(5) 일본

● 절전 포인트 제도 실시

- 전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절전 참여가구에 2,000엔의 포인트를 지급함('22년 8월~)³⁷⁾
 - ☞ 일본 전력회사 중 일부는 전력부족 예상 시간대에 가구의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음. 가구는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결제 가능함
 - ☞ 일본 정부는 절전량에 상관없이 절전에 동참하기만 하면 가구당 2,000엔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금번 정부 정책에 간사이 전력회사도 동참한다고 발표함

● 보조금 지급

- 일본정부는 '22년 10월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에서 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23년 1월~'23년 9월)³⁸⁾
 - ☞ 가정용(저압) 전기요금 대상 7엔/kWh, 기업용(고압) 전기요금 대상 3.5엔/kWh 지원하여 월 전력사용량이 400kWh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2,800엔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 가스요금은 30엔/m³를 지원, 월 가스사용량이 30m³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900엔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 소매 전기·가스 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사후에 인하분을 지원(보조금 지급)하는 형태임

37) 日本經濟新聞(2022.7.1.)

38) 日本經濟新聞(2022.10.29.)

(6) 미국

● 보조금 지급

- 미국은 1976년 도입된 WAP(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와 1980년 도입된 LIHEAP(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에 시행해오던 방식으로 지원함
-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22년 겨울 난방 비용 지원을 위해 약 45억 달러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에 지급함 ('22년 11월)³⁹⁾
 - ☞ 본 지원금은 LIHEAP를 통해 각 주에 분배되며, 동절기 난방 요금 총당 및 미납된 요금 정산과 더불어 가정용 고효율 전자기기의 수리에 활용함

●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 자금 지원

- 미국 정부는 에너지 요금 절감을 위해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3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함('22.03.30.)⁴⁰⁾
 - ☞ 약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재 추가, 오래된 가전제품 교체,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함

39) The White House(2022.11.03.), What They Are Reading in the States: Biden-Harris Administration Helps Lower Families' Energy Expenses

40) The Washington Post(2022.03.30.),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funding to make homes energy-efficient